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08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서지영·안상훈·조은희

조승환 · 최은석 · 이헌승

정성국 · 성일종 · 김대식

곽규택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무 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신상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음에도,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등록기간에도 산입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11.20.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용 오류를 바로잡음(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할 것을 선고한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5조제5항제4호 신설).
- 다.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서 1주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 다.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6개월"을 "1주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 시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른 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	
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	
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u>제49</u>	<u>제49</u>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	조제1항제3호
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	
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	
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	
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u>6개월</u> 이	등) ① <u>1주일</u>
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	

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 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 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④ (생 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 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 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 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 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 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
·
<u>1</u> 주일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1. 2. (생략)
-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 4.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 하지 아니한다.
- 1. ~ 3. (생 략) <신 설>

⑥ ~ ⑧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N 40 - N4 71 No
<u>제49조제1항제3</u>
<u> </u>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
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
기로 할 것을 선고한 기간
⑥ ~ ⑧ (현행과 같음)